

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 경위

- 가. 제 안 자 : 박창순 의원 등 18인
- 나. 의안번호 : 제2550호
- 다. 제 안 일 : 2011. 5. 6.
- 라. 회 부 일 : 2011.10.11.

2. 제안 이유

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업무를 상임위원회 성격과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, 특별위원회 위원정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정수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해당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조정(안 제3조)
 -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: 행정기획위원회 · 도시건설위원회 →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관하되, 법령에 명시된 부분만 각 위원회에서 관장 함.
 -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: 행정기획위원회 · 문화복지위원회 → 행정기획위원회

- 성남산업진흥재단 : 행정기획위원회 · 문화복지위원회 →
경제환경위원회

- 성남문화재단 : 행정기획위원회 · 문화복지위원회 →
문화복지위원회

○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12인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신설
(안 제7조 제8항)

4. 검토 의견

가. 의안 성립에 대한 검토

- ▶ 본 개정안은 박창순 의원님을 비롯한 18인의 의원께서 2011. 5. 6. 발의하여 2011. 10. 11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으로서
- ▶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5분의1 이상(7인 이상)의 의원 연서로 발의한 의안이며 발의요건과 형식요건 그리고 성립요건을 갖추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의안입니다.

나. 상위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

- ▶ 「지방자치법 제22조」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,
「지방자치법 제58조」에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
- ▶ 우리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명확히 하고자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.

다. 종합의견

- ▶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고자 함이나 「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」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함에 따라 개정 목적 보다는 이해득실에 따라 위원회소관을 분류 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으며,
- ▶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소관부서를 정함에 있어 「성남시 시설관리공단」의 업무를 위탁사업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정한 것은 개정 목적에는 부합하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 고자 함에는 반한다 판단됩니다.
- ▶ 또한, 성남시장은 인구증가와 도시개발 등 대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2010.11.1~1011, 3. 31실시한 행정기구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제181회 정례회에 「행정기구 및 정원조직 개편안」을 상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.
- ▶ 끝으로, 특별위원 위원정수를 12인 이내로 정하고자 하는바 기존 조례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위원정수는 특별위원회의 성격, 규모, 활동 범위 등을 감안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.
- ▶ 따라서 위와 같이 제시한 방안을 감안하여 성남시의회의회의규칙 제 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라. 기타사항

- ▶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 중 제3조 제2항 제2호의 "마"목을 “라”로, “바”목을 “마”로, “사”목“을”바“목으로 하며, ”바”목을 “마”목으로 수정 합니다.

위원회별 업무분장 대비표

위원회 명	현 행	개 정	비 고
행정 기획	• 인사총무에 속하는 사항 - 시설관리공단 - 문화재단 - 청소년육성재단 • 수정·중원도서관에 속하는 사항	• 청소년육성재단소관에 속하는 사항. 단) 문화복지예산 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예산은 포함 • 시설관리공단사무 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	
경제 환경	• 산업진흥재단소관 중 인사·조직 등 총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	• 산업진흥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• 시설관리공단사무 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	
문화 복지	• 인사·조직 등 총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 - 문화재단 - 청소년육성재단	• 문화체육복지국소관 중 청소년육성재단에 지원되는 예산은 제외 • 문화재단소관에 속하는 사항 • 시설관리공단사무 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	
도시 건설	• 시설관리공단 ※ 인사·조직 등 총무에 속하는 사항과 수정·중원도서관에 속하는 사항 제외	• 시설관리공단사무 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	

타 시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사업 비교표

구 분	성 남 시	수 원 시	안 양 시
위원회 명 칭	- 행정기획 -경제환경 - 문화복지 -도시건설	- 총무경제 - 문화복지 - 도시환경 - 건설개발	- 총무경제 - 보사환경 - 도시건설
복지시설	• 도서관 시설 - 수정·중원도서관	• 재가지원센터 • 장애인 콜센터 • 연화장	•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
교통시설	• 공영주차장(노상,노외) •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• 공영차고지	• 공영주차장 • 거주자우선주차장 • 견인보관소	• 공영차고지 • 공영주차장 • 견인업무 • 가로 보안등 관리
체육시설	• 탄천,종합운동장 관리 • 여성문화회관스포츠 시설 • 이라인스케이트장 • 황송공원인조잔디구장 • 백현야구장	• 장안구민회관 • 종합운동장 • 화산체육공원 • 여자축구부	• 체육시설물 -종합운동장, 체육관 - 실내수영장 - 인라인롤러경기장 - 빙상장 • 석수체육관 • 호계체육관
기 타	• 종량제봉투 • 다솜마을 (여성임대아파트)	• 지하도상가 • 재활용선별사업 • 쓰레기봉투 판매	• 호계체육관 상가